

< RCEP 전반 >

Q1. RCEP 협정에 관한 자료(절차, 양식, 품목별 원산지규칙 등)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 세관 홈페이지 중 (1)과 (2)의 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관한 자료(2022년 1월 발효)

<https://www.customs.go.jp/kyotsu/kokusai/gaiyou/rcep/rcep.htm>

(2) 원산지규칙포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https://www.customs.go.jp/roo/information/rcep.htm>

주요 게시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협정 본문·부속서(품목별 원산지규칙, 필요적 기재사항)
- 현재 채택하고 있는 원산지 증명제도
- 원산품신고서·원산품신고명세서 양식 견본 및 기재요령
- 「자기신고제도」 이용 안내
- 홈페이지에 있는 원산지증명서 등의 취급
-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일람
- NACCS 원산지증명서 식별코드 등 입력방법
- 설명회 자료 및 동영상
- 문의처 일람

Q2. RCEP 협정에 관한 사항에 대한 문의처를 알려주세요.

○ 아래의 페이지에 정리되어 있으므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jp/kyotsu/kokusai/gaiyou/rcep/rcep_renraku.html

Q3. RCEP 협정 발효국은 어느 나라인가요?

-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의 10개국 간에는 2022년 1월 1일에 발효되었습니다. 한국은 2022년 2월 1일에 발효됩니다.

Q4. RCEP 협정 발효 후에도 CPTPP, 일-ASEAN 협정 등의 적용이 가능한가요?

- RCEP 협정과 일-ASEAN 협정을 비롯한 기존의 경제연휴협정은 각각 개별적인 국제협약으로서 병존하기 때문에 RCEP 협정 발효 후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세울 관계 >

Q5. RCEP 협정세율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 최신판 실행관세율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jp/tariff/index.htm>

Q6. RCEP협정 체약국별 관세인하 기간과 개시시기를 알려주세요.

- 체약국은 협정 발효일(2022년 1월 1일)에 1회차 관세인하를 실시합니다. 일본, 인도네시아, 필리핀의 3개국은 2022년 4월 1일부터 2회차 관세인하를 실시하고, 이후 매년 4월 1일에 관세가 인하됩니다. 상기 3개국 이외의 체약국은 2023년 1월 1일에 2회차 관세인하를 실시하고, 이후 매년 1월 1일에 관세가 인하됩니다.

< 원산지절차 관계 >

Q7. RCEP 협정에서 채택하고 있는 증명제도에 대해 알려주세요.

- 아래 링크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jp/roo/information/rcep/syoumei_tetsuzuki.pdf

Q8. 각 증명제도의 원산지증명서 등에는 소정의 양식이 있나요?

- 원산지증명서 양식은 체약국 간에 공통양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바른 양식은 우측 상단에 「Form RCEP」이라고 기재된 것으로 기타 양식은 RCEP 협정세율 적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인정수출자에 의한 자율증명 및 수출자·생산자 또는 수입자에 의한 자기신고의 경우, 원산지를 증명하기 위한 양식은 협정 상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협정 부속서 3B에 정해진 필요적 기재사항이 망라되고 영어에 의해 작성되며 인보이스 등과의 관련성이 명기되어 있다면 일본세관에서는 임의의 양식으로 작성된 것도 수리합니다. 일본세관 및 경제산업성 홈페이지에 게시한 양식 견본에는 각 필수 기재 항목의 영어표기와 일본어 번역을 병기하고 있으므로, 필요에 따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체약국에 따라서는 자국의 인정수출자가 작성하는 원산지증명 양식을 독자적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원산지증명서 양식

https://www.customs.go.jp/roo/information/rcep/rcep_syoumeisyoyoushiki.pdf

- 자기신고 견본 양식

<https://www.customs.go.jp/roo/information/rcep.htm>

Q9. 원산지증명서는 종이 원본이 필요하나요? 전자발급 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NACCS로 수입신고 할 때는 다른 EPA와 동일하게 200dpi 이상의 해상도로 컬러스캔한 전자적 기록에 의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자발급에 의한 원산지증명서에 대해서도 상기 컬러스캔과 동일하다면 전자적 기록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Q10. 각 체약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어디인가요?

- 세관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jp/kyotsu/kokusai/seido_tetsuduki/syomeisyo.htm#hakkyu

Q11. 인정수출자에 의한 원산지신고를 이용하는 경우 수출체약국에서 당해 수출자를 인정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나요?

- 수출체약국에서 정당하게 인정을 받았는지 여부는 수출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Q12. 제3자 증명제도의 인영, 서명, 인정수출자 리스트는 공개되니까?

- 인영, 서명, 인정수출자 리스트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이는 RCEP 협정 이외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Q13. 원산품신고서는 수입신고 시마다 작성해야 합니까?

- 매번 작성하셔야 합니다.

Q14. 발효일 전에 선적된 화물에 대해 RCEP 협정세율을 적용해서 수입신고할 수 있나요?

-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협정 발효 후에 발급된 원산지증명서 등을 신고 시에 제출하시면 적용 가능합니다. 단, 협정 발효일로부터 180일 이내(2022년 6월 29일까지)에 수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Q15. 과세가격 총액이 20만 엔 이하인 경우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생략해도 되나요?

- 원산지증명서 제출 생략이 가능하나, 수입하는 물품이 RCEP 협정상의 원산품이라야 하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잘 확인한 후 수입신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Q16. 하나의 인보이스로 RCEP 협정세율과 일-ASEAN 협정세율 병용이 가능합니까?

-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각각 협정에서 필요로 하는 원산지증명서 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Q17. RCEP 협정세율과 관세잠정조치법 제8조에 근거한 관세 경감은 병용이 가능합니까?

- 가능합니다.

Q18. NACCS에서 원산지증명서 식별코드 입력방법을 알려주세요.

- 다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jp/kyotsu/kokusai/gaiyou/rcep/rcep_naccsnyuuryoku.pdf

Q19. 수출자로부터 받은 원산지증명서를 확인하였는데 QR코드만 기재되어 있고 인영과 서명이 없습니다.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인영과 서명이 없는 원산지증명서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수출자에게 인영과 서명이 있는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송부하도록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Q20. 수출자로부터 받은 원산지증명서를 확인하였는데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세관에서는 아래 링크에 있는 「홈결이 있는 원산지증명서 등의 취급」에 근거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의 기재사항에 홈결이 있는지 수입신고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홈결이 발견된 경우에는 수출자에게 수출채약국의 발급기관으로부터 홈결이 없는 원산지증명서 재발급 받도록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jp/roo/procedure/index.htm>

Q21. 원산품신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내용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 세관에서는 원산품신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의 질문에 대해 상담해 드리고 있으나, 원산품신고서 등의 사전심사는 접수하고 있지 않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관 홈페이지에 게시된 기재요령이나 「자기신고제도 이용절차(RCEP 협정)」을 참고하여, 작성한 원산품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홈결이 없는지 잘 확인하신 후에 수입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